

# 消費者 安全確保의 根幹

## -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-

최규학/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

협회는 식품업계의 공동관심 사항과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한 업계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책 및 전문적인 정보의 취득을 통한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저명인사초청 조찬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. 이에 지난 2월 26일(목)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최규학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을 초빙하여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발표된 「消費者 安全確保의 根幹」 전문을 게재한다.

- 편집자 注 -

### I. 2004년 화두 : 안전, 건강

#### 식탁 안전문제 사회적 이슈

- 조류독감, 광우병 등 식탁 안전문제가 지속적 문제제기
    -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국 19명 사망자 발생, 최근 미국서도 발생 미산 닭고기 수입중단
    - 안전문제 국민 관심 증가되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 부족
  -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질병 전이, 인체 위해우려
    - 음식문화 및 사회적 문제로 발전
      - 고기류 소비 기피, 해산물·야채류 소비 증가
      - 닭고기, 오리고기, 소고기 관련 영세업체 도산 증가
- ※ 조류독감, 광우병 사건으로 소비자 58%가 닭고기 구입하지 않고, 46%가 소고기를 구입하지 않고 있으며, 이유는 60%가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소비하지 않음(유통업계 조사 자료)

#### □ 첨단기술 제품의 안전문제

- 휴대폰 배터리 연소사건(소니)
  - 소보원 : 신기술 및 첨단제품의 안전성 조사사업 추진중

#### □ 웰빙 사회적 분위기 확산

- 건강기구, 건강보조식품 관심 및 소비 증대
  - 소보원 새집 증후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

## II. 소비자 정책 기조 및 방향

#### □ 소비자 문제 발생

- 私人间 거래 국가 불간섭 → 당사자간 대등성 인정
  - 고도산업산회, 첨단 기술제품 정보 부족, 대량생산·유통 과정 불량상품, 과당경쟁에 의한 부당 거래로 인한 소비자 문제 필연 발생
  - 조직화되지 않은 소비자 → 소액·다발사건 소송 한계 (힘의 불균형)
  - 정부, 80年代 『거래불간섭 원칙』예외 조치 → 소비자보호법 제정, 방판법, 할부거래법 등 보완적 민사특별법 입법·규제

#### □ 소비자 정책(거래, 안전, 구제)

- ①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예방(거래의 적정화 정책)
  - 부당한 표시, 허위·과장광고, 부당한 약관, 부당한 판매방법
  - 전자상거래 과정(전자금융거래, 모바일커머스, 인터넷 신용카드 발급 등)에서의 소비자보호
- ② 결합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·신체상의 위해 예방(안전확보 정책)
  - 위해정보 수집(시장감시 : 45萬 상담정보 + 57개 위해정보 기관 + 국내외 소비자모니터) → 다양한 채널로 정보수집
    - 사업자 시정이 필요한 사항  
(제도개선, 시장감시 기능 강화)
    - 소비자안전경보 신속발령, 피해확산 방지
  - (수집 건수 : '02년 2,566건 '03년 5,271건)

- 리콜 활성화

- 2003년 리콜실적(자동차 59건, 식품 9건, 공산품 등 6건)

- 자발적 리콜 69건, 리콜명령 5건

※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자발적 리콜임 - 자발적 리콜환경 조성 필요

- 제조물책임법 → 정부 안전관리 의지

- 제조물책임 상담센터(14개 PL센터) 설치

- PL 관련 상담 전수 : 소보원 2,019건, PL센터 1,993건

**③ 예방대책 불구 피해 신속·공정한 피해**

(피해구제 정책)

- 궁극적 사법부 소관 (당사자간 분쟁)

- 소액·다발 사건 : 비용·시간·절차 소송실익 문제

- 『調停』이라는 재판외의 분쟁 해결방안 분쟁조정위원회 : 준사법 기능

**□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비자정책**

※ 소보원에서는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소비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,

- 일관된 정책목표와 연차별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'소비자정책 중장기 추진방안'을 2002년에 마련, 추진중(2004년 3차년도)

**1. 소비자정책 목표 및 기조**

**가. 정책 목표 : 소비자권익 실현 및 복지증대**

**나. 정책 기조**

-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 속에서 소비자의 권리실현 및 복지증대라고 하는 소비자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율, 책임, 협력의 3대 정책기조를 명확히 정립

### 【정부 : 협력】

- 先進的인 소비자 법령 · 제도 정비
- 협력적 정책 추진체계 (中央과 中央, 中央 · 地方 · 團體)

### 【소비자 : 책임】

- 保護對象 자주적 · 합리적 의사 결정 주체
- 의식 · 力量 強化
- 정부정책 능동적 참여, 적극적 주체로서 역할전환 필요

### 【기업 : 자율】

- 타율적 규제 대상 소비자 보호주체(자율적 해결유도)
  - 이제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도 그 동안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방식을 탈피하여 경제주체, 즉 소비자, 사업자, 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소비자문제에 대한 재조명과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

## 2. 소비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정책 방향

### 가. 개별적, 분산적 추진 기조에서 통합총괄 추진 기조 강화

- 현안중심의 분산대응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기조 필요
-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적 통합 전략 목표하에서 소관부처별 소비자정책이 수립 · 집행되는 정책기획조정 기능 강화 필요

### 나. 사후조치 정책기조에서 사전예방 정책기조로 전환

- 한정된 자원으로 급증하는 소비자피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사전 예방차원의 정책 전환 필요
-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영역에서의 지원정책 강화 필요

### 다. 타율적 규제기조에서 자율적 규제 정책기조로 전환

- 기존의 사업자 강제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사회적 규제비용의 비효율성과 최소수준의 소비자보호 노력 부작용 초래

- 시장에서의 소비자만족을 위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,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파트너쉽 관계설정 전환이 필요

#### **라. 수동적 보호대상에서 능동적 참여주체로의 소비자 인식 전환에 따른 소비자 참여 수용 기조 확대**

-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을 감안하여, 소비자를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간주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, 능동적인 참여주체로서의 소비자역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

### **III. 식품안전 정책**

#### **□ 식품 안전 정책의 중요성**

- 국민의 생명·신체와 직결
  - 식품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, 우리의 생명 건강과 직결됨
  - 공산품 용역 등에 비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성 증대
- 식품안전 문제의 지속적 대두
  - 경제성장, 소득증가, 소비자의식 향상, 식품안전의 중요성 강조 등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
  - 과거 : 불량식품이 가장 큰 위해요소
  - 현재 : 여전히 불량식품 문제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, 수입 유해식품 및 농축수산물, GMO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, 환경호르몬,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은 오히려 악화
  - 위해식품이 범람하고 식품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절대 일류국가가 될 수 없음

#### **□ 식품안전 정책의 문제점**

- 식품 종류별, 소관 부처별로 다원화된 안전 관리체계

- 이로 인해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중복수행 또는 사각지대 발생, 식품안전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책 수립 곤란
- 소비자중심의 종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감독 강화 필요.
- 유해식품 처벌기준 관대
  - 유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
  - 유해식품을 제조 유통시키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통하여 강력하게 응징 필요
- 수입식품 체계적 안전관리 미흡
  - 먹거리의 60%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체계 미비
  - 수입 전 해외정보 수집 및 수입 원산지의 생산과정 관리 강화 필요
  - 수입식품 검사항목에 안전 및 위생관련 항목 확대, 신종 유해물질의 검사방법 개선 필요

#### □ 식품 관련 위해정보

##### ○ 위해정보분석 내용

- 지난 3년간 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위해정보 건수 (13,510건)

(2001. 1~2003. 12)

스포츠/레저/ 놀이용품	식료품/ 기호품	건물/설비	가구	보건위생용품	기타
3,072건	2,336건	1,666건	1,092건	1,022건	4,367건

- 식품 위해정보 유형
  - 식중독에 의한 것과 이물질의 혼입이나 포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누어짐.
  - 부패나 세균에 의한 식중독사고
  - 용기의 설계상의 안전성배려부족으로 인한 예리한 부분에의 상해
  - 사용하는 재료, 약품, 첨가물 등에 의한 건강장애
  - 음식물의 형상배려부족에 의한 노인, 유아 질식사고
- 식품사고의 특징

① 원인 및 인과관계 규명 곤란

- 원인이 된 식품이 이미 소비·처분되는 경우가 많고, 세균·부패·변질이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자·유통업자·소비자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명확치 않음.

② 복합적인 원인의 작용

- 소비자의 체질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 발생 가능성(예: 심야에 찬 맥주를 마시고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)
- 사고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로서 미생물이나 식품의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음식시와 동일한 상태를 검증하는 것이 곤란

③ 피해확산의 광역성 및 신속성

-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피해는 전국적으로,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대처 곤란
- 식품의 성질상 인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비교적 가격이싼 상품이라는 점에서 클레임 다발

□ 소비자 안전정책

○ 소비자안전기구의 정비

- 재경부 “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” 각 부처, 전문가, 단체 참여
- 상시 감시·경고 기능 강화
- 리콜 활성화 (강제리콜, 자발적 리콜 유도)
- 안전 관련법 정비
- 소보원 내 “소비자안전센터” 설치
- 인력 및 예산 확대

○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추진

- 금년 1월 식의약청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
- ※ 일본은 '03. 6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, 시행중(식품안전위원회 발족)
-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식품 생산관리부서와 안전관리부서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식품안전을 위한 부처별 업무통합 및 협조를 위한 법 제정 필요

- 주체별 역할, 리스크분석에 의한 식품안전성 확보, 안전확보를 위한 시책 충실통의 내용이 포함 예정

○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대응체계 구축

- 「생활속의 안전」이라는 주제로 식품, 공산품 및 시설물 등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
- 소비자 위해 발생 품목에 대한 소비자안전경보 발령을 통한 신속한 대응, 피해 확산 방지
  - 2003년 : 바퀴달린 운동화, 칼라렌즈, 요요, 소형믹서기 등
  - 2004년 : 제수용품 안전경보(식중독), 미니컵 제리(질식사)
- 위해식품 등 안전 취약품목에 대해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조사·연구, 시험검사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등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
- 특히 금년에 6대 중점추진 과제중의 하나로 소비자안전 정책을 선정, 취약분야 인 식품에 대한 안전기능 강화 계획

○ 결함(위해)정보 수집 機能 強化

- 위해정보 수집 및 리콜 등 안전조치 강화
  - 국공립병원 위해정보보고기관 추가
- 관련 정부기관 정보 공유, 결함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

○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감시 기능 활성화

- 시장에서의 위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감시
- 제조·유통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적발
- 유통기한, 제조년월일, 성분표시 등의 적정성 여부
- 다이어트 식품, 건강보조식품, 특수영양식품 등의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여부 조사 등

○ 결합제품 시정(리콜) 활성화

- 개별 안전관련 법규 정비(법령정비기획단)
-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안전 업무 전담조직 체계 마련

-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기능 강화
- 주의 경고표시, 안전마크, 품질표시제도 활성화

- 취약계층 「어린이 안전대책」 강구
  - 국민 대토론회 개최 및 안전 취약 분야 집중 실태조사
  - 어린이안전 정책과제를 총리실, 청와대 건의
  - 2003년 '어린이 안전 원년' 선포(2003. 5. 5)
  - 정부차원의 '어린이 안전대책반(국무총리실)' 운영 추진중
  - ※ 금년에도 어린이 안전 취약 8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

#### **IV.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업의 역할**

##### **□ 자율적 소비자보호 기업환경 조성 필요**

- 자율적 피해구제 기능 강화
  - 소비자입장에서의 자가안전기준 제정 등을 통한 품질관리
  - 철저한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 강화
  - 기업의 소비자피해 예방노력 및 자율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
- 소비자 보호 주체로서의 역할
  - 공정경쟁, 공정거래를 통한 소비자보호, 기업경쟁력 제고
  - 소비자 역량제고를 위한 소비자교육 기능 강화
    -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교육활동을 통한 신소비자 양성
  - 소비자 능력제고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예방, 기업 경영이해 및 공존 환경 조성
    - 평생교육차원의 소비자교육 기반 강화 필요
- 소비자에게 상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충실히, 그리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.
  - 식품의 성분, 유통기한, 오·남용시 위험 발생 가능성,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줌
  - 특히 선전, 광고 등을 통하여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 과장성 광고 자체 필요

### □ 품질관리 및 자발적인 리콜을 통한 신뢰받는 기업

- 인간존중에 입각한 안전설계
  - “안전 없이 설계 없다”라는 인식으로 철저히 무장
-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결합제품 최소화 노력
  - 소비자 입장에서의 자가안전기준 제정 등을 통한 품질관리
  - 철저한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 강화
- 결합제품 자발적 시정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
  - 결합제품은 소비자 위해 및 막대한 손해배상 가능성(PL법)
  - 결합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 활동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
  - 소비자안전을 위한 전사적 인식 전환
- 최고 경영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
  - 제품의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강한 의지가 중요
  - '소비자 안전'을 기업이념에 포함
  - 전사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필요
- 소비자불만 처리부서 활성화 및 기능강화 필요
  - IMF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'고객만족 경영'을 외치면서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'소비자불만 처리부서'를 폐지
    - 이는 아직 우리 기업들이 진정으로 고객만족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.
  - 소비자의 니즈(Needs)와 불만의 목소리를 기업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
    - 이를 위해서는 '소비자불만 처리부서'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.
  - 안전 사고정보의 수집체계 강화 및 피드백 활성화
    -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구제 요구를 기업의 품질과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

## □ 결 론

### ○ 소비자 안전은 기업 경쟁력의 근원

-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국내 유입 가속
- 세계화는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및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
  -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소비자 안전 필수
  - 제품의 경쟁력이 안전측면에서 결정

### ○ 관련 업계의 의견 적극 수렴

-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, 함께 소비자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.
- 소비자와 직접 접하는 일선에서 건의할 사항,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람.
- 가능하다면, 업종별·업계별 CEO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.